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윤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5453
----------	-------

발의연월일 : 2025. 12. 19.

발의자 : 김윤 · 박홍배 · 박상혁
전현희 · 남인순 · 김우영
백승아 · 김남희 · 최혁진
정태호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는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해당 인구의 36.2% 가량이 국민연금제도의 사각지대에 위치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있음. 이에 따르면 적용제외자, 납부예외자, 장기체납자 등 사각지대에 위치한 집단의 평균 가입기간은 55.2개월에 불과한 반면 그 외 집단의 평균 가입기간은 144.7개월로 노후준비에 격차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현재 노령연금 수급자의 평균 연금액은 61.7만원으로 최소생활비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실정임.

이에 적용제외자, 납부예외자, 장기체납자, 생활비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연금액을 받고 있는 자 등에 대한 국민연금 사각지대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그 결과에 기반한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방안을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에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3 신

설 및 제4조).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3(국민연금 사각지대 실태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에 관한 정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적용제외자, 납부예외자, 장기체납자, 수급자 중 연금액이 생활 안정에 필요한 금액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자 등에 대한 국민연금 사각지대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법인·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 방법 및 공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4조제2항 본문 중 “연금보험료의 조정 및 국민연금기금의 운용 계획”을 “연금보험료의 조정, 국민연금기금의 운용 계획 및 제3조의3제1

향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에 기반한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방안”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p>제3조의3(국민연금 사각지대 실태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에 관한 정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적용제외자, 납부예외자, 장기체납자, 수급자 중 연금액이 생활 안정에 필요한 금액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자 등에 대한 국민연금 사각지대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p> <p>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법인·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p>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